

대구지방법원 2020. 9. 1 선고 2020나3051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이용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성철

변론 종결 2020. 6. 25.

판결 선고 2020. 9. 1.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19. 선고 2019가소485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을 "2019. 4. 4.부터 포항시 남구 B 전 102㎡ 중, 별지도면 표시 1, 2, 11, 12, 13,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7㎡와 별지 도면 표시 2, 3, 14, 6, 13, 12,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82,0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9. 4. 4.부터 포항시 남구 B 전 102㎡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3. C로부터 포항시 남구 B 전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전 235㎡(2008. 4. 24.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7. 9.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7. 8. 31. 포항시 남구 E 전 647㎡(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그 무렵 분할 전 E 토지는 E 전 310㎡(2008. 4. 24.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 D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1979. 3. 20. 경상북도고시 F로 소로 G(소로 3류)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결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소로 G에 포함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 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2007. 10. 16. D 토지에 대하여만 건축허가를 받아 D 토지 상에 4층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3. 31.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관련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등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거나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979. 3. 20. 경상북도고시 F로 소로 G(소로 3류)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소로 G에 포함된 사실은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었다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로로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를 매수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지정되어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D 토지 상에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9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1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무렵 이 사건 토지 중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3,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7㎡[이하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이라 한다])와 별지 도면 표시 2, 3, 14, 6, 13, 12,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이하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이라 한다])가 시멘트로 도로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던 사실, 현재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맨홀과 하수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않고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다가 구주택을 신축한 이후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을 점유 ·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 (나) 부분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에 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다) 부분은 방수포장된 부분으로, 원고가 위 (다) 부분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배수구 및 가스배출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달리 피고가 위 (다) 부분을 실질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포장된 이래 계속하여 현재의 현황대로 도로로 이용되는 곳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 설령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 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1979. 3. 20. 경상북도고시 F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소로G(소로 3류)에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절차 또는 보상한 내역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타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우선대상지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보상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중략) 이 사건 토지 상 도시계획도로(G)의 개설 및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4년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중략) 장기간 도로로 이용됨에 따라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 판단하시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사실상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의 교통에 공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그로서는 당해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도로의 임의제공행위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등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자기소유의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그 택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적어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사용수익의 포기 내지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토지의 위치,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방치한 채 다른 형태로의 사용수익을 일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이라든지, 또는 국가 등의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로 말미암아 구 도시계획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규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그 토지를 사실상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다른

토지들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매각한 결과, 그 토지가 인근주민들의 사실상의 통행로로 사용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 또는 분할매각의 사실만으로 바로 소유자가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이 시멘트로 도로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 개설 경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경위 및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게 된 경위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C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는 의미로 이 사건토지에 대한 독점적 · 배타적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가 2019. 4.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14. 4. 3.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판단기준

1) 관련법리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6120 판결 등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제1항의 기초사실,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될당시의 현황은 도로로 제한되지 않은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분할 전 E 토지의 지목은 '전'이었고, 2007. 8. 31.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토지, D 토지, 분할 후 E 토지의 지목도 모두 '전'이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를 매수하면서 분할 전 E 토지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3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2개월 만에 D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 이러한 토지 분할 경위 및 건축허가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토지와 D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도로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이후인 2008. 4. 24. D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전'이다.

④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6미터 도로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다.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이 사건다가구주택 신축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가 아닌 상태('전' 또는 '대')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액

제1심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전' 또는 '대'로 볼 경우 2014. 4. 4.부터 2019. 4. 3.까지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9. 4. 3.경 월 차임 상당액은 195,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기간	연 차임(원)	월 차임(원)
2014. 4. 4. ~ 2015. 4. 3.	2,300,100	191,680
2015. 4. 4. ~ 2016. 4. 3.	2,193,000	182,750
2016. 4. 4. ~ 2017. 4. 3.	2,244,000	187,000
2017. 4. 4. ~ 2018. 4. 3.	2,295,000	191,250
2018. 4. 4. ~ 2019. 4. 3.	2,346,000	195,500
합계	11,378,100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을 점유 ·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속적 · 반복적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의 이행기 도래 예정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014. 4. 4.부터 2019. 4. 3.까지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의 차임 상당액인 10,597,250원 [= 2014. 4. 4.부터 2019. 4. 3.까지 이 사건 토지의 연 차임 상당액 합계 11,378,100원 $\times$ 95㎡ (이 사건 토지 (가) 부분 47㎡ + 이 사건 토지 (나) 부분 48㎡) $\div$ 10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2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2.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2019. 4. 4.부터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82,083원 (=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 상당액 195,500원 $\times$ 95㎡ $\div$ 102㎡)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은 위 1항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10,597,1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 1항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는 제1심 인용범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중 "원고의 소유권상실일"부분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부적절하므로 1)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지원, 판사 노지환

1)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기재되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대법원 2019. 2. 14. 선고2015다244432 판결 참조).